들일 1

농업인 및 농촌의 기준

농업인의 기준

- □「농업.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
- 법 제3조(정의) 제2호 "농업인"이란 다음과 같다. 농업인: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- 법 시행령 제3조(농업인의 기준)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1.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)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
 - 2.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
 - 3.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
 - 4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・가공・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
 - 5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·가공·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

농촌지역의 기준

□「농업.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제3조5호 및「농림축산식품부고시」제2015-171호 ('15.12.23)호에서 정한 지역

- 읍.면의 지역

- -「지방자치법」제2조제1항제2호나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
- -「지방자치법」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)의 지역 중 동지역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6조제1 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
 - 가.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 보전녹지지역
 - 나. 관리지역 중 생산 · 보전관리지역
 - 다.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.8.14.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0조 제1호나목(1)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(다만,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)